

제15장 분쟁해결

제15.1조 목적

이 장은 가능한 경우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2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을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15.3조 적용범위

1. 제15.3조제2항 및 제15.3조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여기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이하 “대상 규정” 이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2. 이 장은 비위반제소와 그 밖의 상황제소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다음 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의한다: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2장(투자 원활화 협력), 제13장(경제협력) 및 제14장(중소기업)

제15.4조

연락처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지정된 연락처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된다.

제15.5조

정보 요청

제15.6조 또는 제15.7조 각각에 따라 협의,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요청 전에,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의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제출될 서면 응답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제15.6조

협의

1.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른다는 목적으로 신의성실하게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제15.3조에 언급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와 그 사실적 근거 및 적용 가능하다고 여기는 대상 규정을 명시한 법적 근거의 서술을 포함하여 요청의 사유를 적시한,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된 서면 요청으로 협의를 구한다.
3.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신속하게, 그러나 요청의 접수일 후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답변한다.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개최된다. 협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부패성 상품 또는 적절한 경우 계절성 상품 또는 계절성 서비스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개최된다. 협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15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협의 중에,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그 조치의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6. 양 당사국이 협의 중에 공개한 모든 정보와 취한 입장을 포함하여 협의는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7. 협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개최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우에 협의는, 요청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8. 요청받은 당사국이 요청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협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이가 제15.6조제3항 또는 제15.6조제4항 각각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개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양 당사국이 협의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협이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협의를 구한 당사국은 제15.8조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7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특정 입장은 비밀이며,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양 당사국이 선택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3.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는 패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다.

제15.8조 패널의 설치

1.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제15.6조에 언급된 기한에 따른 협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이 협정의 제15.6조제8항에 언급된 협의가 3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이나 적절한 경우 계절성 상품 또는 계절성 서비스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과 관련하여 15일 내에 개최되지 않거나, 양 당사국이 협의를 갖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피소 당사국의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2. 패널 설치 요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되는 서면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문제가 되는 조치를 적시하고 제소의 사실적 근거와 그러한 조치가 관련 대상 규정과 어떻게 불합치하는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규정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기재한다.

3. 제1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요청을 한 경우, 패널이 설치된다.

제15.9조 패널의 구성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2. 제15.8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패널 설치 요청부터 20일 내에, 각 당사국은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양 당사국은 제15.8조제3항에 따른 패널의 설치부터 40일 내에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세 번째 패널위원을 공동합의로 임명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2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20일의 기간 내에 WTO 사무총장에게 임명되지 않은 패널위원을 요청부터 20일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일부터 20일 내에 WTO 사무총장 자신이 임명되지 않은 패널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분쟁의 양 당사국에 통보하거나 임명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분쟁 당사국도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임명되지 않은 패널위원을 요청부터 20일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5. 양 당사국이 제2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패널의장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10일 내에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각 3명의 후보자들로 구성된 당사국 각각의 명부를 교환한다. 패널의장은 양 당사국이 각국의 후보자 명부를 교환하는 기한의 만료부터 10일 내에 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추첨에 의한 패널의장의 선정은 공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6. 당사국이 제5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후보자 3명의 명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7. 패널의 구성일은 3명의 선정된 패널위원 중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이다.

제15.10조 긴급 결정

당사국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패널의 구성으로부터 15일 내에 분쟁이 긴급한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린다.

제15.11조 패널위원의 요건

1. 각 패널위원은
 - 가. 법, 국제무역 및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의 전문성을 입증한다.
 - 나.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 관계에 있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 다.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
 - 라. 부속서 15-나에 규정된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그리고
 - 마.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2. 패널의장은 또한 분쟁해결 절차에 경험이 있다.
3.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안과 관련하여 제15.7조에 따라 양 당사국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한 인은 그 사안에서 패널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제15.12조 패널위원의 교체

원 패널의 어떠한 패널위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하거나 행동 규범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교체될 필요가 있을 경우, 후임 패널위원은 제15.9조에 따른 원 패널위원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되고, 패널의 업무는 후임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동안 정지된다.

제15.13조 패널의 기능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 가.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대상규정과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용 가능성 및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 나. 패널의 결정과 보고서에 사실 및 법적 조사결과와 패널이 한 모든 조사결과 및 내린 모든 결론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다. 그리고
- 다. 양 당사국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고, 상호 합의된 해결의 개발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15.14조 위임사항

1. 양 당사국이 패널 설치일부터 15일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 당사국이 인용한 이 협정의 관련 대상 규정에 비추어 패널 설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조치와 이 협정의 관련 대상 규정과의 합치성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내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권고가 있을 경우 권고를 하고, 제15.18조 및 제15.19조에 따라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명시된 일정 내에 그 항에 언급된 것 외의 위임사항에 합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합의된 위임사항을 그들의 합의 후 5일 이내에 패널에 통보한다.

제15.15조

해석 규칙

1. 패널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대상 규정을 해석한다.
2. 적절한 경우, 패널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보고서와 WTO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과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또한 고려할 수 있다.
3. 패널의 판정은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제15.16조

패널 절차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모범 절차 규칙을 따른다.
2. 패널이 검토 중인 사안에 관하여 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않다.
3. 패널의 심의 및 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4.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의 개발을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6. 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정을 컨센서스로 내리며, 컨센서스가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패널 구성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별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별개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7. 패널의 판정은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15.17조

정보의 접수

1.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관련 정보를 양 당사국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정보에 대한 패널의 모든 요청에 신속하고 완전하게 응답한다.

2.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어떠한 정보원으로부터도 구할 수 있다.

3.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패널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기술적 조언 또는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4. 이 조에 따라 패널이 획득한 정보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양 당사국은 그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18조

잠정보고서

1. 패널은 패널의 구성일부터 90일 내에 양 당사국에 잠정보고서를 전달한다. 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의장은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전

달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은 기한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잠정보고서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2. 잠정보고서는 서술적 부분과 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론을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부터 15일 내에 잠정보고서의 정확한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서면 의견과 서면 요청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대하여 그 요청의 전달부터 6일 내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4. 잠정보고서에 대한 각 당사국의 서면 의견과 요청을 고려한 후,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19조

최종 보고서

1. 패널은 패널의 구성일부터 135일 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다. 패널이 이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의장은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은 기한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최종 보고서는 잠정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과 요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패널은 자신의 최종 보고서에 최종 보고서가 이행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를 부분적으로만 공표하거나 최종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기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대한 전달부터 15일 내에 대중에 공개된다.

제15.20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피소 당사국이 제15.3조에 따른 대상 규정에 불합치하게 행동했다고 패널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그리고 선의로 패널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즉시 준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의 전달 후 30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통보하고,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제15.21조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

1. 양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15.20조 제2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이 한 통보의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원 패널에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한다. 그러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이 항에 언급된 20일의 기간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2. 원 패널은 관련 요청으로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자신의 결정을 전달한다.

3.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는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제15.22조

준수 검토

1. 피소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한달 전에 최종 보고서 준수에서의 진전 상황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2.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피소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충분한 준수를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서술과 함께 모든 조치에 대한 통보를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3.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의 존재 또는 대상 규정과의 합치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15.23조제1항에 따라 보상이 구해질 수 있거나 혜택의 정지가 적용될 수 있기 전에, 제소 당사국은 원 패널에 그 사안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4. 그 요청은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의 적시와 왜 피소 당사국이 한 어떤 조치도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지 못했는지 또는 달리 대상 규정과 불합치하는지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5. 패널은 그 요청의 제출일로부터 60일 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자신의 결정을 전달한다.

제15.23조

미준수의 경우 일시적 구제

1. 피소 당사국이

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어떠한 조치도 통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최종 보고서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제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또는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소 당사국이 통보한,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가 대상 규정과 불합치한다고 원 패널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 또는 대안적 방안에 합의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이 제7항에 따른 요청을 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에 통보를 송달한 날 후 20일째 되는 날에 이전 항에 언급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4.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가. 피소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한 수준이다. 그리고

나. 이 협정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으로 제한된다.

5.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그 동일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통보하는 통지에는 그 기초가 되는 이유를 적시한다.

6.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제1항에서 예견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는 일시적이며 조치의 관련 대상 규정과의 불합치가 제거되거나, 양 당사국이 제15.28조에 따른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를 때까지만 적용된다.

7. 피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제4항 및 제5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일 후 15일 이내에 원 패널에 그 사안을 조사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원 패널은 피소 당사국으로부터의 요청 접수 후 45일 이내, 또는 원 패널이 원래의 구성원으로 설치되지 못할 경우 새롭게 설치된 패널의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통보한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는 패널이 이 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을 전달하기 전까지 정지되지 않는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그 결정에 합치한다.

제15.24조

일시적 구제의 채택 후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의 검토

1. 피소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의 준수를 위하여 한 조치를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가. 제15.23조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통보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종료한다. 또는

나. 필요한 보상에 합의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통보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보상의 적용을 종료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관련 대상 규정과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원 패널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의 제출일 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통보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대상 규정과 합치한다고 패널이 결정하는 경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보상의 적용은 각 경우에 맞게 결정일 후 15일 이내에 종료된다. 통보된 조치가 대상 규정의 부분적 준수만을 달성한다고 패널이 결정하는 경우,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보상의 수준은 패널의 결정에 비추어 조정된다.

제15.25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양 당사국이 서면으로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고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연속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패널의 업무를 정지한다. 패널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이 장에 따른 관련 기간은 패널 업무가 정지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은 양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정지 기간의 종료 전에 업무를 재개한다. 패널 업무가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된 경우, 패널의 권한은 실효되고 분쟁해결 절차는 종료된다.

제15.26조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1. 이 장은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그 밖의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양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2. 이 협정과 WTO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른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특정 조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3. 제2항에 언급된 특정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이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하고 이 장 또는 다른 국제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 절차는 다른 절차들을 배제하고 이용된다.
4. 제3항의 목적상,
 - 가.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제15.8조에 따라 당사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나. WTO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당사국이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조에 따라 패널 설치를 요청한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 다. 그 밖의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그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5.27조

비용

-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 2. 각 당사국은 패널 절차와 관련되어 발생한 자국의 경비와 그 밖의 법무 비용을 부담한다.

제15.28조

상호 합의된 해결

- 1. 양 당사국은 제15.3조에 언급된 분쟁에 대하여 언제라도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를 수 있다.
- 2. 패널 절차 동안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는 경우, 양 당사국은 패널의장에게 그러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에 따라 패널은 종료된다.
- 3. 각 당사국은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4. 이행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이 한 모든 조치를 합의된 기간의 만료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15.29조

기간

1.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간은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부터 달력상의 일로 계산된다.
2. 이 장에 언급된 기간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
3.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간은 긴급한 경우에 대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절반으로 단축된다.

제15.30조

부속서

공동위원회는 부속서 15-가 및 15-나를 수정할 수 있다.

부속서 15-가
패널 절차 규칙

일정표

1. 양 당사국과 협의 후, 패널은 최종 패널위원의 임명으로부터 7일 내에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패널 과정을 위한 일정표를 정한다.
2. 패널 과정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패널 설치일부터 최종 보고서 일까지 135일을 넘지 않는다.
3. 패널이 일정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은 제안된 수정과 그 이유를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15.10조에 따른 긴급한 경우,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적절한 경우 일정표를 조정하고 그러한 조정을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4.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패널의 구성 일 후 20일 이내에 패널에 전달한다.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 전달일 후 20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패널 및 제소 당사국에 전달한다.
5. 한쪽 당사국은 각 패널위원과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의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6. 각 당사국은 심리의 종결부터 20일 내에 심리 동안 발생했던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패널과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은 모든 정보 또는 서면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그것이 패널에 제출됨과 동시에 다른 쪽 분쟁 당사국에 전송한다.
8. 양 당사국과 패널위원은 수령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택배, 팩스, 텔렉스, 전신 또

는 그 발송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 수단으로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9. 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수정될 수 있다.

패널의 운영

10. 패널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양 당사국과 패널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 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 패널 심의는 비밀이다.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패널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패널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정보와 진술된 것에 비추어 초안이 작성된다.

12. 개별 패널위원에 의하여 패널 보고서에 표현된 의견은 익명이다.

심리

13. 양 당사국은 심리와 패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14. 패널은 양 당사국이 사건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1회의 심리를 규정한다.

15. 당사국이 비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은 추가 심리를 열거나 심리를 전혀 열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16. 모든 패널위원은 심리에 참석한다. 패널 심리는 패널위원과 양 당사국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개최된다. 그러나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보조인, 번역가, 분쟁 당사국의 자문인, 행정 직원, 통역사 또는 지정된 기록원 또한 패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패널이 수립한 그러한 모든 방안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다.

17.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 사건을 제출할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패널이 수행한다. 패널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제소 당사국의 변론, 피소 당사국의 변론, 제소 당사국의 답변,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제소 당사국의 마무리 진술 그리고 피소 당사국의 마무리 진술. 의장은 각 당사국에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구두 변론을 위한 제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서면 질문

18. 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국에 직접 서면 질문을 할 수 있다. 패널이 서면 질문을 제시한 당사국은 패널이 수립한 일정표에 따라 패널과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답변을 전달한다.

19. 각 당사국은 패널이 수립한 일정표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응답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비밀

20. 패널의 심리와 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이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21. 한쪽 당사국이 패널에 대한 자국의 서면입장을 비밀로 지정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본을 요청일 후 10일 이내에 패널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규칙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작업언어

22. 서면입장, 구두 변론 또는 발언, 패널 보고서 및 양 당사국 간 그리고 패널과의 모든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을 포함한 패널 절차의 작업언어는 영어이다.

장소

23. 패널 심리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된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고 추가적인 심리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한다.

경비

24. 패널은 자신의 보조인, 지정된 기록원 또는 자신이 보유한 그 밖의 개인에게 지불되는 것을 포함하여, 절차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일반 경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

일방적 접촉

25.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26.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패널위원과도 회합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27. 어떠한 패널위원도 다른 쪽 당사국과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하지 않는다.

부속서 15-나

패널위원 및 이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 관여하는 그 밖의 인에 대한 행동 규범¹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사안별 과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위원의 업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 나. **후보자**란 패널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고려되는 인을 말한다.
 - 다. **패널위원**이란 제15.8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 라.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 마. **직원**이란 패널위원에 대하여, 보조인을 제외하고 패널위원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과정에 대한 책임

2.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 과정의 진실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패널위원은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한다.

공개 의무

¹ 이 행동 규범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5.7조에 따른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명된 인에게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3.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자신의 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일단 선정되면, 패널위원은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이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및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패널위원의 임무 수행

5. 패널위원은 이 장 및 그 부속서의 규정을 준수한다.

6. 선정 시, 패널위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평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신속하게 수행한다.

7. 패널위원은 절차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패널위원의 참여기회를 거부하지 않는다.

8.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

9.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0.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않는다.

11. 패널위원은 다른 패널위원에 의한 이 부속서의 실제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양 당사국 모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패널위원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지하지 않는다. 각 패널위원은 패널 절차에 할애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자신의 직원과 보조인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결산보고를 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12.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다. 패널위원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3. 패널위원은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대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4. 패널위원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 또는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5. 패널위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한다.

16. 패널위원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17. 패널위원은 자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특정 상황에서의 임무

18.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그 패널위원이 패널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보고서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의 유지

19.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중 획득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20. 패널위원은 패널 보고서 공표에 앞서 그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21. 패널위원이나 전임 패널위원은 법적 또는 헌법적 요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22. 패널위원은 패널 절차에 관한 공식 성명을 내지 않는다.